



제 1 장 총 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한솔케미칼이라 말한다.

영문으로는 Hansol Chemical Co., Ltd.라 표기한다.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각종 화공약품, 화학제품 및 독극물의 제조 및 판매업
- 2) 유지가공업, 합성수지 제조 및 가공업
- 3) 전기 및 반도체재료 제조 가공 및 판매업
- 4) 기술용역 및 플랜트 수출업
- 5) 수출입업, 각종 위탁업 및 대행업
- 6) 석유화학제품 제조 가공 및 판매업
- 7) 요업제품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 8) 자동차부품의 제조 및 판매와 이에 관련된 사업
- 9) 부동산 임대업
- 10) 컨테이너 제조업
- 11) 의약품, 원료의약품, 식품첨가물, 정밀화학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 12)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본점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 ①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 특별시에 둔다.
-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의 지점, 사무소, 출장소 또는 공장을 둘 수 있다.

제4조(공고 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ansolchemical.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헤럴드경제신문」에 게재한다.

단, 헤럴드경제신문에 게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중앙일보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 식

제5조(발행 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삼천만주로 한다.

제6조(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



제7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일십만주로 한다.

제8조(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제8조의 2(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우선주식은 발행주식의 4분의 1 범위내에서 발행할 수 있다.
-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9% 이상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 시켜 배당한다.
-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 결의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⑥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⑦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으며,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 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 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 등록한다.

제10조(신주인수권)

-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② 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령에 의하거나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이외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관계법령에 의하여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규정에 범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일반 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관계법령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관계법령에 의하여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규정에 범위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관계법령에 의하여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규정에 범위내에서 영업상 필요에 따라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자에게,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기타 회사의 영업상 관련이 있는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의 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 발행가격은 관련 법조문에 따라 이사회 결의시 정하도록 함

제10조의 2(주식매수선택권)

- ① 이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내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단, 이사는 제외) 이 경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등에 연동하는 성과 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등에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사항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관계법령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관계법령의 규정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원을 포함)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 (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2. 주요주주(관계법령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원을 포함)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 (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99를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이상 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가격중 높은 금액
 -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주식의 실질가액
 -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실질가액
-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하며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8년내에 행사할 수 있다.
-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2. 당해 임·직원이 고의로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
 -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의 3(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 연도의 직전 영업 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시가발행)

이 회사는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로 발행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그 발행가격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12조(명의개서대리인)

-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 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와 신탁 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를 정지한다.
-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채

제14조(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사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을 위임하는 경우 제2항에서 정한사항 이외에도 발행 조건, 상환기간 등을 정하여 위임할 수 있음.

제14조의 2(전환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가액이 8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가액 중 600억원은 보통주식으로 200억원은 무의결권 우선 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 주식으로 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⑥ 이사회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8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1항 사유로 인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의 최저한도를 5,000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4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중 300억원은 보통주식으로 100억원은 무의결권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가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제1항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⑥ 이사회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4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1항 사유로 인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신주인수권시행가격의 최저한도를 5,000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할 수 있다.

제17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2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4 장 주 주 총 회

제18조(소집시기)

-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9조(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헤럴드경제신문 외 1개 일간신문에 2회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2조(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있으면 그자가 의장이 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의 발언시간과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4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5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제한)

- ① 모회사, 이 회사와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6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외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9조(주주총회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 사, 이사회

제30조(이사의 수)

-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 ②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31조(이사의 선임)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의 1(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년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32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33조(이사의 보선)

-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법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사외이사가 해임, 사망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30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를 결의로 대표이사 1명과 사장, 부사장, 전무 및 상무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35조(이사의 직무)

-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의장에 임한다.
- ②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5조의 2(이사의 보고의무)

- ①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이사회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업무의 중요 사항을 결의한다.
- ②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이사회를 소집하는 이사는 이사회 회일전일까지 각 이사에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7조(이사회 결의방법)

-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결의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8조(이사회 규정)

이사회 관련 기타 명시되지 않은 이사회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은 별도의 이사회 규정에 의한다.

제39조(이사회 의사록)

-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0조(위원회)

- ① 이 회사는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의 결의로 정한다.
-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6조, 제37조,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결정한다.
- ② 이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42조(상담역, 고문) 이 회사는 이사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 6 장 감 사 위 원 회

제43조(감사위원회의 구성)

-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 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④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⑤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있는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⑥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 ⑦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4조(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 할 수 없다.
-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45조(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7 장 계 산

제46조(사업연도) 이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7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등)

-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6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대차대조표
 - 2. 손익계산서
 - 3. 그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전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복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⑤ 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7조의 2(외부감사인의 선임)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하며, 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한다. 이 경우 외부감사인 선임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48조(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제49조(주식의 소각)

-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1.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2.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할 주식가액의 총액
 3.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이사회결의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일 이전이어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관계법령의 방법에 의할 것. 이 경우 그 취득기간과 방법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금액이 당해 사업년도말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안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일 것.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는 그 소각의 결의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에 제2항 각호의 사항과 주식을 소각한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0조(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 회사가 현물배당을 하는 경우 주주가 배당되는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음.



제51조(배당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부 칙

제1조(규정 및 규칙) 이사회는 이 정관의 취지에서 이 회사의 규정 및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기타 법령 및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다. 제3조(우선주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제8조의 2 제1항의 우선주식의 발행한도는 당사의 주식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후에 효력이 발생하며 효력 발생시까지는 우선주식의 발행한도는 발행주식의 4분의 1로 한다.

제4조(시행일) 이 정관은 1989년 2월 24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3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2, 제13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 제32조, 제35조의 2, 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46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0조의 2의 개정은 본 정관개정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시행한다.”

2.(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적용) 제15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일 이후 시행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 1, 제45조의 1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제31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1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제3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3항, 제10조의 2 5항, 제15조 및 제15조의 2, 제36조, 제39조, 제44조, 제46조의
개정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제33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3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제39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12조, 16조 및 제17조의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제40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